

1 상륙거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 31일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각의양해,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토대로 법무성에서는 당분간 상륙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상륙거부대상의 국가·지역에 대한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제5조 제1항 제14호(주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내 상륙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륙거부 대상이었던 외국인 중, 상륙거부의 대상지정이 해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무성 혹은 재외공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영주권자는 입관법 제5조 제1항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상기의 각조치에 의해 상륙이 거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다음의 (1)~(4)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륙이 허가됩니다. 그러나 방역의 관점에서 법무성 홈페이지 <외국인의 입국·재입국에 관한 출국전 검사증명에 관하여>에 따라 입국·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입국허가(유사재입국포함, 이하 동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

(2) 신규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주2)

ㄱ. 8월 31일까지는 재입국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상륙거부의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 출국한 자로서 그 국가·지역이 상륙거부대상지역에 지정된 후,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었던 자

ㄴ. 일본인·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ㄷ. 정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본에 가족이 체류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

ㄹ. 「교육」 혹은 「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속 혹은 소속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충이 없으면 해당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의료」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의료체제의 충실·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ㅂ. 10월 1일 이후 입국한 자로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가 일본에 있는 자 (「외교」 혹은 「공용」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외.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간 상용목적의 사증을 받은 자에 한함.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

덧붙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에 오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상륙이 거부됩니다.

○잠시 상륙 거부

·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영국 혹은 남아프리카에 체류한 자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 상륙신청하기 14일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이었던 지역 (영국과 남아프리카 제외) 에 체류한 자

또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거부대상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21일 이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3) 「국제적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주3)에 따라 상륙을 신청하는 외국인

덧붙여,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에 오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륙거부

○ 2021년 1월 14일부터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자

·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영국 혹은 남아프리카에 체류한 자

○ 2021년 1월 21일부터 긴급사태해제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상륙거부 대상자

· 상륙신청 하기 14일 전까지 상륙거부대상지역 (영국과 남아프리카 제외)에 체류한 자

또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거부대상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21년 1월21일 이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4) 상기 (1)~(3) 외에 특히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등 개별 사정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 1)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간략)

( 상륙 거부 )

제5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으로 상륙할 수 없다.

1~13 (생략)

14 전 각호에서 거론한 자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혹은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2 (생략)

( 주2) 입국 목적 등에 따라,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체재국·지역의 일본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주3) 「국제적 인적교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는 감염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상륙거부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등의 출입국을 출국전 검사증명이나 접촉확인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등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조건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 (자세한 내용은 [외무성 홈페이지](#) 참조)。

덧붙여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에서 발급받은 사증 중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순회」, 「기능」, 「문화활동」, 「유학」, 「연수」, 「가족체류」, 「특정활동 (창업 제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출입국체류관리청 출입국관리부 심판과

전화: (대표) 03-3580-4111 (내선 4446·

4447)